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1486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1486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9나647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오BA)

【피고,피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황B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9나6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시의 사실들을 인용한 다음, 원고는 보증신청인의 신용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주택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확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변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심사근거 서류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인데, 이 사건 신용보증을 위하여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각 등기부의 가압류기재란 위에 종이를 오려 붙여 복사한 탓으로 각 기재란의 구분선이 나타나지 않는 등 언뜻 보아도 정상적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변조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그 형식적 제출만을 확인한 채 변조사실을 간과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수탁기관으로서의 심사항목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